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80
------	-----

2019. 8. 29.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강동길 의원(찬성의원 11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29.)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강동길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에 한하여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로서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자·출연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출자·출연의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7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이외에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출자·출연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 제출시 포함해야할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의회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별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 제7조의2 신설)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으로 인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제18조)¹⁾. 이 중 문화·관광분야는 23건이며, 체육시설운영 사무는 3건임.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또한 출연할 수 있는 경우를 ►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제17조, 제18조).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 직접 설립한 출연기관 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출자·출연을 하고 있음.

〈 개별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대상기관	근거법령	출연요구서 제출기한	출연금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매년 10월 31일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²⁾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없음	없음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매년 8월 31일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4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법 ³⁾	없음	없음
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매년 12월 31일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지정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함.

3) 「방송법」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서울시는 성북구,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20%를 부담(서울 20%, 성북 20%, 방통위 60%)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이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출자·출연 동의안의 첨부서류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⁴⁾.
- 이는 개별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방자치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의회의 관리·감독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동의절차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80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 (1명)

찬 성 자 : 김경영, 김정환, 김호평,
박순규, 양민규, 이경선,
이병도, 이영실, 전병주,
정재웅, 홍성룡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에 한하여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단 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로서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출자·출연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 나. 출자·출연의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7조의2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출자·출연의 동의)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 6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출자·출연의 동의)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